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'21.8.26.(목)석간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담 당 자	윤 송 이 사무관 (02-2100-2983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광 우(02-3145-6770)		이 건 필 팀 장 (02-3145-677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 진 호(02-3145-7550)		문 재 희 팀 장 (02-3145-7552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권 화 종(02-3145-8070)		박 현 섭 팀 장 (02-3145-8072)

**제 목 :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·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
의무화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**

**- 상호저축은행업·여신전문금융업·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
안 규정변경 예고 ('21.8.26. ~ '21.10.7.)**

1 추진배경

- 지난 4.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,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,
 -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·여신전문금융업·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합니다.

<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도입 >

□ (현행)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,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

* 은행·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

<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>

구분	저축은행	여전사		상호금융
		카드	캐피탈(리스)	
한도성 여신	×	△(신용카드만)	×	×
지급보증	○	△(PF대출만)	△(PF대출만)	(금지)

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

1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(상호저축은행업감독 규정 §36,§38,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§9,§11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§11, 별표1-1. 별표1-3)

○ (현행)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,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

- 반면,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

- 또한 저축은행,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음

*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('20년말): 총 57.2조
(저축은행: 5.4조원, 여전사: 12.3조원, 상호금융: 39.6조원)

○ (개선) 위험관리체계 강화,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* 근거를 마련

* 다만,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%까지 상향 조정(은행·보험 참고)

<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>

구 분		현 행	개 선(안)
저축은행		X	○ (‘22) 20% → (‘23) 40%
여전사	신용카드	신용판매, 카드대출	○ (좌 동) (현재 50%) → (‘23) 40%
		기타 한도성 여신 (비회원 신용대출 등)	X ○ (‘22) 20% → (‘23) 40%
	비카드	한도성 여신 (사업자 운영자금 대출, 재고금융 대출 등)	X ○ (‘22) 20% → (‘23) 40%
상호금융		X	○ (‘22) 20% → (‘23) 30% → (‘24) 40%

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(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§11)

- **(현행)**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,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음
 - * 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, 상호금융은 지급 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
- **(개선)**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
 - *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%

<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>

구 분		현 행	개 선(안)
저축은행		○	(좌 동)
여전사	부동산PF	○	(좌 동)
	부동산PF外 (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)	X	○

3 향후 계획

- 입법예고('21.8.26.~'21.10.7.) 및 관계부처 협의, 규제위·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'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'22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.
- 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,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.

 	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